

# 인사규정

##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별표 2와 같다”를 “별표 2와 같고,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·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3(채용계획 수립 및 사전 협의) ① 이사장은 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창원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,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(비정규직 근로자)의 채용 등 창원시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.
- ② 창원시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이사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,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전 까지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는 모두 문서로 한다.
- ③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창원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창원시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 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이사장은 창원시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채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채용의 필요성
2. 예상결원 및 정·현원 현황

3. 채용인원, 응시자격 요건, 필기시험 여부, 서류전형 심사기준, 면접방법

4.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

제13조의 제목 및 제1항과 제2항 중 “수습”을 각각 “시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임용하여야 한다.”를 “임용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이사장은 채용비리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,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.

제24조제1항제2호 중 “공금의 횡령·유용”을 “공금의 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희롱 및 성매매, 채용비리”로 하고, “3개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며,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강등·정직: 18개월

나. 감봉: 12개월

다. 견책: 6개월

제47조의2제1항 중 “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채용비리 관련자는 5년”을 “공금의 횡령·유용의 경우에는 5년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    안
<p>제9조(신규임용방법) ① (생   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 경쟁임용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,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<u>“별표 2”와 같다.</u></p> <p>③~④ (생   략)</p> <p>⑤ <u>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용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. 일용직 직원의 임용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⑥ (생   략)</p>	<p>제9조(신규임용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 경쟁임용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,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<u>“별표 2”와 같고,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·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  제&gt;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
제9조의3(채용계획 수립 및 사전

협 의) ① 이사장은 공고 예정 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창원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인력의 채용,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(비정규직 근로자)의 채용 등 창원시장의 사전 동 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.

② 창원시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이사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,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는 모두 문서로 한다.

③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창원시장과 사전협 의하여야 한다.

④ 창원시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이사장은 창원시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3조(수습임용) ① 실무경험이 없는 3급 이하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.

② 신규 채용된 자가 제1항의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제29조 및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.

1.~3. (생략)

③~④ (생략)

⑤ 채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채용의 필요성

2. 예상결원 및 정·현원 현황

3. 채용인원, 응시자격 요건, 필기시험 여부, 서류전형 심사 기준, 면접방법

4.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

제13조(시보임용) ① 실무경험이 없는 3급 이하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에 3개월의 시보기간을 거쳐 정규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② 신규 채용된 자가 제1항의 시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제29조 및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.

1.~3. (현행과 같음)

③~④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보직관리의 원칙) ①~⑧

(생략)

<신설>

제24조(승진 및 승급의 제한)

① (생략)

1. (생략)

2.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 (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)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가. 견책: 6월

나. 감봉: 1년

다. 정직·강등: 1년 6월

②~③ (생략)

제16조(보직관리의 원칙) ①~⑧

(현행과 같음)

⑨ 이사장은 채용비리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,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.

제24조(승진 및 승급의 제한)

①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 (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희롱 및 성매매, 채용비리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 가산한 기간)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가. 강등·정직: 18개월

나. 감봉: 12개월

다. 견책: 6개월

②~③ (현행과 같음)

제47조의2(징계시효) ① 징계의결  
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 
발생한 날부터 3년(금품 및  
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 
채용비리 관련자는 5년)이 지  
나면 하지 못한다.

② ~ ③ (생략)

제47조의2(징계시효) ① 징계의결  
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 
발생한 날부터 3년(금품 및  
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  
은 5년)이 지나면 하지 못하  
다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